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391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8.

발 의 자: 어기구 · 허종식 · 박상혁

박 정・김정호・양향자

김홍걸 • 신동근 • 이병훈

송갑석 • 위성곤 • 윤재갑

한병도 • 이개호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의 빈번한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맹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른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뱀, 전갈, 야생 포유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도 주로 야생동물의 보호를 중심으로 포획이나 수입 등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사람의 생명이 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하여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반려주의동물이 사람에게 신체 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,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(안 제2조제3호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).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"반려주의동물"이란 반려동물 외에 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"유실·유기방지"를 "유실·유기방지 및 사고예방"으로 한다.

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4(반려주의동물의 관리) ①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등은 반려 주의동물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.
 - ②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는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한다.

제46조제1항제2호 중 "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"을 "제13조 제2항,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13조의4제1항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

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5. 제1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자

제47조제1항에 제2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8. 제1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소유자등
- 5.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의2. (생략)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3의3. "반려주의동물"이란 반려 동물 외에 반려(伴侶) 목적으 로 기르는 동물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 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 한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 다. 4. • 5. (생략) 4. • 5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 제12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・유기방지 ----유실·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 및 사고예방-----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• 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이라 한 다)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대상동 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

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제4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기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(생략)
-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
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3조의4(반려주의동물의 관리)
①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등은
반려주의동물이 사람에게 신체
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농
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
항을 따라야 한다.
②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는
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
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
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교육을 받아야 한다.
제46조(벌칙) ①
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13조제2항</u> , 제13조의2제1
<u>항</u> 또는 제13조의4제1항을
②

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1의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2. · 3. (생략)

③ ~ ⑤ (생 략)

제4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2의7. (생 략) <u><신</u> 설>

3. ~ 5. (생략)

- ② (생략)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4. (생 략)

<신 설>

<u>.</u>
1. ~ 1의4. (현행과 같음)
1의5. 제13조의4제1항을 위반하
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
<u>르게 한 자</u>
2. • 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7조(과태료) ①
<u>,</u>
1. ~ 2의7. (현행과 같음)
2의8. 제13조의4제1항을 위반하
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
하는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
소유자등
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
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
및 과리에 과하 교육을 받지

아니한 소유자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